〔일련번호 : 10〕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물품검사 검사공무원 기준 미준수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□□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□□과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83조(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제2항에 따르면 물품의 매입·수리·수선·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제52조(물품검수조서등)에 따르면 물품검수조서는 동 시행규칙의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르며, 별지 제38호서식에는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, 구청·보건소·구의회의 경우 계약금액이 2,000만원 이상, 동의 경우 500만원 이상일 때 검수인 6급 1인을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2022년~2023년 기간동안 총 6건, 198,926천원에 대하여 각 2,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검수인에 6급 1인을 포함하여야 함에도에 7급 이하 2명이 물품검수를 실시하였다. (세부내역 별도송부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**(주의)**